

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견기업을 투자·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10월 20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산업통상
자원부장관 성윤모

●**법률 제17525호**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당초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·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10월 20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산업통상
자원부장관 성윤모

●**법률 제17526호**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